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희망지킴이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상품명 변경,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 
수수료면제 종류에 타행 자동이체 추가, 조문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b>『희망지킴이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b></p> 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  <u>희망지킴이 통장</u>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『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』, 『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</u>』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(이하 "보험급여"라 함)를 수령하는 <u>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1인1계좌로 합니다.</u></p> <p><b>제 3 조 ~ 제 5 조</b> (생략)</p> <p><b>제 6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. 무제한 면제 대상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가. ~ 바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사. <u>납부자이체</u>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</p> <p>2. 월 10회 면제 대상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가 ~ 다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 7 조 ~ 제 8 조</b> (생략)</p> <p><b>제 9 조 기타</b>  <u>위 특약 사항은 변경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한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.</u></p>	<p><b>『KEB하나 희망지킴이통장』 특약</b></p> 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 <u>“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</u> 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『<u>예금거래 기본약관</u>』 및 『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</u>』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(이하 "보험급여"라 함)를 수령하는 <u>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</u></p> <p><b>제 3 조 ~ 제 5 조</b> (좌동)</p> <p><b>제 6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좌동)                      1. 무제한 면제 대상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가. ~ 바. (좌동)                      사. <u>납부자 자동이체(타행 자동이체 포함)</u>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</p> <p>2. 월 10회 면제 대상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가 ~ 다 (좌동)</p> <p>② (좌동)</p> <p><b>제 7 조 ~ 제 8 조</b> (좌동)</p> <p><b>(삭제)</b></p>	<p>상품명 변경 구행명 삭제 조항명 변경 상품명 변경 구행명 삭제</p> <p>가입대상 추가</p> <p>타행 자동이체 추가</p> <p>조문 삭제 (내용 중복)</p>